한샘 인권 · 노동경영선언

제1조 | 인권 보호

모든 구성원은 개별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으며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고 기본권에 대해 충분히 보호받는다.

제2조 | 노동 기본권 보호

모든 구성원은 헌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보호받는다. 또한 국가에서 정한 노동관계법규와 ILO에 따라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.

제3조 | 강제노동 금지

구성원은 강제노동, 인신매매를 포함한 비인도적 처우나 형벌,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며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.

제4조 | 아동노동 금지, 연소자 근로

회사는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용인하지 않는다. 또한 미성년자의 인턴, 실습, 견습 등의 경우 위험도가 높은 업무와 야간근무에서 제외하고 노동관계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.

제5조 | 구성원 복지 강화

회사는 가족친화, 모성보호를 비롯해 구성원의 다양성을 반영한 사내 복 지제도를 확대 운영하며, 모든 구성원은 이에 대해 차별 없이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.

제6조 | 다양성 존중 및 차별금지

모든 구성원은 출신, 인종, 지역(국적), 성별, 종교, 나이,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최적의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보호받는다.

제7조 |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

제조사와 협력사, 대리점, 고객, 지역사회 등 직·간접적 협력 및 거래관계에 있는 이해 관계자들의 인권·노동 국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제8조 | 이해관계자 표현의 자유 보장

이해관계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구성원들의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지한다.

제9조 |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보호

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 보안체계를 철저히 관리한다.

제10조 | 공급망 관리

협력관계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공급망 관리를 통해 인권·노동경영 확대와 환경 친화적 원자재 조달에 기여한다.

※ 한샘은 유엔(UN) 세계인권선언과 국제노동기구(ILO) 협약 등 인권, 노동권 보호를 위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지지하고 존중하며 한샘의 인권·노동경영선언은 이를 기반으로 제정되었습니다.